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Ⅱ)

2021. 8. 18(수) ~ 19(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계획

□ 추진배경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 주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한 의견 수렴**

□ 일시 및 장소: ’21.8.18(수) ~ 19(목), 14:00 ~ 16:00, 11동 대회의실

*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21.8.18(수), ▲(**직업성질병 등 기타사항**) ’21.8.19(목)

□ 운영방식

○ **집중 검토**를 위해 **논의 주제**를 **핵심 이슈**(❶ 직업성 질병 ❷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에 집중하여 토론회** 방식(전문가 발제 후 토론)으로 운영

□ 진행(안)

일시		내용	비고
8.18(수)	14:00	인사말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
	14:03	참석자 인사	사회 : 강성규 교수(가천의대)
	14:07	발제	권혁 교수(부산대)
	14:40	토론	이시원 변호사(율촌) 김규석 국장(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임우택 본부장(경총) 양옥석 실장(중기중앙회) 김광일 본부장(한국노총) 최명선 실장(민주노총)
	15:45	마무리 및 인사	사회자
8.19(목)	14:00	인사말 및 참석자 인사	사회 : 강성규 교수(가천의대)
	14:05	발제	이상길 실장(산업안전보건연구원)
	14:35	토론	김인아 교수(한양대의대) 김규석 국장(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임우택 본부장(경총) 양옥석 실장(중기중앙회) 김광일 본부장(한국노총) 최명선 실장(민주노총)
	15:45	마무리 및 인사	사회자

목 차

발제문

- 중대재해처벌법의 직업성 질병 ····· 1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상길 실장

토론문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김인아 교수 ····· 11
- 한국경영자총협회 임우택 본부장 ····· 19
- 중소기업중앙회 양옥석 실장 ····· 29
- 한국노총 김광일 본부장 ····· 33
- 민주노총 최명선 실장 ····· 49

별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57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67

발제문

중대재해처벌법의 직업성 질병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 상 길 실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직업성 질병

1. 법 제2조에 대한 해석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본 시행령의 경우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질병 범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것임.

○ 가목의 사망자의 경우 사고 사망, 질병 사망의 구분이 없이 사망자 1인이므로 관습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고 사망에 집중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하여 왔으나, 질병 사망이 포함하여 해석할 가능성이 있음.

○ 단, 이러한 경우 직업성 질병의 결과, 즉 3인 미만에서 발생한 직업성 질병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이상, 아무리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음.

○ 따라서, 본 법에서 중대산업재해의 정의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차용하는 것보다, 사망과 그에 준하는 건강 결과를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본 시행령의 경우 다목에만 한정적으로 제한을 두는 것으로, 직업성 질병의 중대재해란, 1년내 3건이 동일 요인에 의해 발생 경우에만 적용됨. 이는 중대 재해의 수치적인 발생만 규정하고 있음

○ 본 법의 본질은 형법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책임자에게 그 과실 또는 고의에 대한 형벌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하지만, 그 처벌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인 행위를 지명하기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예방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 측을 처벌하고 있음.

○ 처벌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행위 없이 예방과 관련된 조치의 이행 여부로 처벌을 결정하기 때문에, 본 법의 경우 법 자체는 형법이나, 중대 재해의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성격도 강함.

○ 따라서, 본 법의 시행령에서 직업성 질환을 규정할 때는, 그 처벌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예방 방법이 현존하여 예방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질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가목과 나목의 법령을 검토할 경우 질병의 결과의 중대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직업성 질병 선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조건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
-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
- 법적 의무 이행으로 사업주의 질병 예방 가능성
- 질병으로 인한 건강 피해의 심각성

2. 직업성 질병 선정의 원칙에 대한 해석

1) 명확한 인과관계

○ 본 법의 취지가, 중대재해의 처벌에 목적이 있는 형법이기 때문에, 직업성 질병과 직업적인 노출과 사건 간의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설명이 되어야 함.

○ 현재의 예방 및 보상의 체계에서는 상당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노동자 집단의 역학적인 발생 및 악화 위험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 하지만, 처벌을 위한 경우에는 직업적인 노출과 질병 발생의 원인이 증명되어야 함.

○ 다요인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위험요인이 사건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처벌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2) 예방 가능성

○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산안법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의무 이행할 때 질병 예방이 가능한 경우

○ 법상의 의무의 경우 4,5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며, 본 고찰에서는 예방 가능성, 책임의 규정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시행령 질병 범위를 검토할 때는 실질적인 질병의 특성에 따라 예방 가능성을 평가하였음

3) 결과의 중대성

○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경우

○ 본 법에서는 피해가 심각한 경우라고 하는 것의 객관적 정의가 존재 하지 않음.

○ 따라서 시행령 상에서도 그 정의를 규정한데 어려움이 있으나, 가목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는 사망 또는 그에 준하는 피해의 중대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함. 이 부분은 구체적인 정의에 대해 추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직업성 질환 목록

○ 원칙대로 판단할 경우 이 법은 처벌을 위한 별도의 법이기 때문에 위의 질병 선정의 원칙에 따라 모든 직업성 질병을 검토하여 타당한 질병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함.

○ 타 법에서 규정하는 직업성 질병 목록을 차용하는 경우는 타 법에서 규정하는 질병에 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적당한 방법이 아님.

○ 또한, 직업성 질병에 대한 목록을 만들지 않고, 위의 원칙에 해당되는 모든 질병을 평가하여 처벌하는 것도 가능한 조치임.

○ 하지만, 본 법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대재해 예방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기존에 법적으로 의무 수행이 가능하고, 알려진 질병에 차용하여, 법 자체의 실효성 및 처벌의 정당성을 위해 기존의 직업성 질병 목록에서 차용하는 것을 선택하였음.

○ 본 시행령에서는 산재보상보험법의 질병 목록을 차용하였으며, 이는 어느정도 타당하나, 공법의 수행에 있어서 본 법에서의 판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위험할 것으로 판단됨.

4. 시행령(안) 검토

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브로마이드·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2.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 복부 산통, 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
3.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한기, 고열, 치조농루, 설사, 단백뇨 등 급성 중독
4. 일시적으로 다량의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 신부전 등 급성 중독
5.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두통, 현기증, 구역, 구토, 흉부 압박감, 흥분상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 급성 중독
6. 일시적으로 다량의 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 급성 중독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청색증,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급성 중독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소실,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 급성 중독
9. 시안화수소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호흡곤란, 두통, 구역, 구토 등 급성 중독
10. 불화수소·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화학적 화상, 청색증, 호흡곤란, 폐수종, 부정맥 등 급성 중독
11. 인(백린, 황린 등 금지물질)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점막자극 증상, 경련, 폐부종, 중추신경계장해, 자율신경계장해 등 급성 중독
12.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위장관계 질병
13. 기타 화학적 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및 별표22에서 규정된 화학적 인자에 한한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중독

○ 1-12의 경우에는 화학물질에 의한 급성 중독 질환에 대한 사항을 나열하고, 13에서는 기타 화학적 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및 별표22에서 규정된 화학적 인자에 한한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중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급성 중독의 경우에는 시행령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며, 기존의 산업 보건 체계에 포함된 물질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예방 가능성에 대한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4.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16.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 질병은 제외한다.

○ 기도과민증후군의 경우, 위 원칙에 타당한 질병으로 판단되나, 노출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

○ 독성 간염의 경우 그 노출 물질을 보다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17.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18.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19.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20.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 감염성 질환의 경우에는 그 발생 시기를 알기 어려우며,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는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음

21.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압착증,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

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23.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무형성 빈혈

24.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열사병

○ 전리 방사선의 경우 결정적 영향의 한 모든 영향이 포괄되어야 하며, 확률적 영향에 의한 것은 배제될 필요가 있음. 무형성 빈혈의 경우 애매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5. 시행령 외 질환에 의한 고찰

○ 그 외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질병 명에 대해서 인과관계의 명확성, 예방 가능성, 결과의 중대성의 원칙에 따라 평가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본 질환의 경우 그 결과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다양하고 만성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알려진 직업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그 발생을 확률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 없앨 수는 없음

2) 직업성 암

○ 본 질환의 경우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며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발병 경과를 가짐으로 그 발생 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며, 다요인으로 발생하고, 직업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그 발생을 확률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 없앨 수는 없음

3) 근골격계 질환

○ 질병 결과의 중대성이 떨어지고, 다요인으로 발생하며, 원인 제거 어려움.

토론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토론회 직업성 질병의 범위 토론문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김 인 아 교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토론회
직업성 질병의 범위 토론문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보건대학원

김 인 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검토 고려사항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법의 취지

- ○ 형사처벌을 통해 반복되는 산재사망과 이에 준하는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

❑ 법의 구조

- ○ 제2조에서 대상이 되는 재해를 정의
- ○ 제4조에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
- ○ 제4조에서 정한 의무 위반에 의해 제2조의 대상 질병이 발생했다고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처벌

❑ 직업병 목록 명시

- ○ 적어도 이런 특정 직업성 질병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신호를 기업에 보내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음

토론범위

- ❑ 목록의 작성 원칙
- ❑ 현재 시행령(안) 검토 의견
- ❑ 추가 고려 필요한 항목
- ❑ 기타 의견

호	질병명	해당 유해요인
1~13	급성중독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브로마이드·일산화탄소, 납, 수은, 크롬, 벤젠, 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트리클로로에틸렌. 이산화질소, 황화수소, 시안화수소, 불화수소·불산, 인, 카드뮴, 기타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대상 화학적 인자
14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15	스티븐슨존슨증후군	트리클로로에틸렌
16	독성간염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17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HIV	보건의료종사자, 혈액전파성
18	렙토스피라증	병원체가 서식할 수 있는 습한 환경
19	탄서, 단독, 브루셀라증	동물취급
20	레지오넬라증	오염된 냉각수
21	압착증, 산소중독, 감압병, 공기색전증	기압 변화
22	산소결핍증	
23	급성방사선증, 무형성 빈혈	전리방사선
24	열사병	고열

3

목록의 작성 원칙

- ❑ 중대성
  - ○ 의학적 중증도 + 재해 발생의 반복성
- ❑ 인과관계의 명확성
  - ○ 산재보상에서의 상당인과관계와는 다른 개념임
    - 산재보상, 예방에서의 인과관계는 인구집단 대상 위험
      - component cause or counterfactual cause
  - ○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확신을 주는 인과관계 입증
    - 예, 가습기 살균제 판결 등
- ❑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 ○ 예방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함
  - ○ 근로감독관의 실효성 있는 수사가 가능
    - 사업주의 위법성 입증 가능성

<산재보험법 상 상당인과관계의 판단>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된 것으로 봄. 즉,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위험요인이 있었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현재 시행령(안) 검토의견

❑ 급성중독

○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명시된 화학적 요인 중 급성 중독이 가능한 요인이 일부 빠져 있음

• 만성중독으로 볼 수 있는 신경계질환이나 신장질환으로 포함된 경우이나 급성 중독에서도 유사한 질환 발생 가능

○ 다른 요인 배제 목적의 단서조항 삭제 검토 : 업무관련성 인정이 중대재해 정의의 기본 전제임

○ '일시적으로 다량' 이라는 조건 삭제 검토 가능성

• 업무관련성 인정이 된 경우 유해요인의 노출량과 급성중독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미 판단한 것임

○ 중독 증상의 나열 여부 : KCD-7에 따른 진단명은 "독성 효과" 임

❑ 개인적 이상반응(idiosyncrasy)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질환의 경우

○ 예) 스티븐슨존슨증후군, DMF에 의한 독성간염

추가 고려 필요한 항목에 대한 검토

❑ 급성 중독 추가

○ 검토 유해요인 : 비소 또는 비소 화합물, 아크릴아미드, 메틸 n-부틸케톤, 망간 또는 그 화합물, 이황화탄소

• 실효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13호에 포함

❑ 근골격계 질환

○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은 용이한 편이나 직접적 인과관계 입증은 어려움

○ 중증도와 예방 가능성 측면에서도 고려 어렵다 판단됨

❑ 직업성 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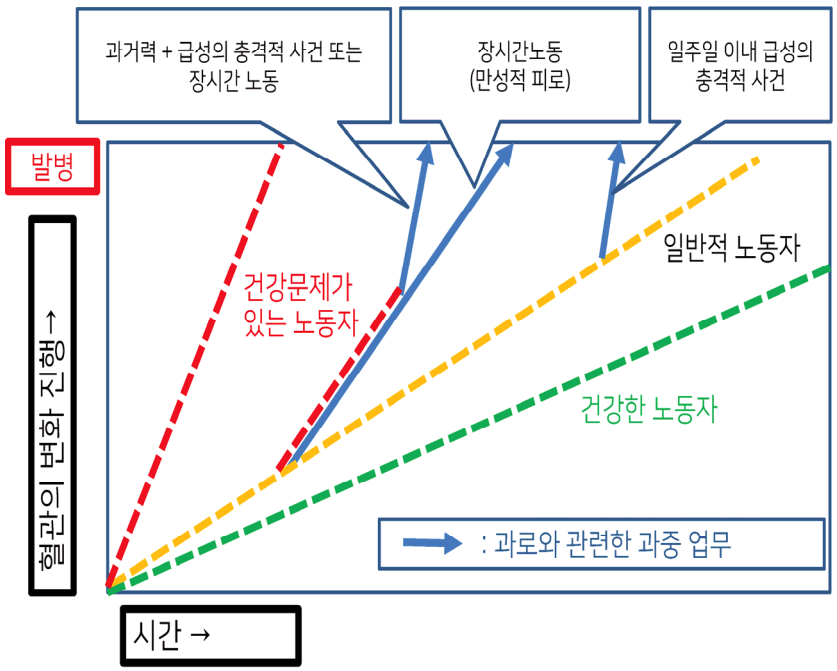
○ 과거 노출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고, 직접적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움

○ 예방 가능성도 제한적임

❑ 뇌심혈관계 질환

○ 상당인과관계 입증은 용이한 편이나 직접적 인과관계 입증은 어려움

○ 중증도 상 고려의 대상이며, 사망 사례가 많아 제2조의1에 따른 중대재해로 법 적용 가능



기타 고려 사항

❑ 시행 이전에 해결방안이나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필요한 사항

- ○ 고용상의 문제
  - • 채용상 불이익 : 고혈압, 당뇨 등
  - • 고용유지 상의 불이익 : 암 발생의 경우 해고 (또는 계약 연장 안 하는 방식 등)
- ○ 산재보험에서의 업무상 질병 과소보고의 가능성
  - • 산재보험에 중대재해법과 같은 엄격한 원인주의가 영향을 줘서는 안됨
- ○ 새로운 화학물질을 작업환경 현장에서 사용하게 된 경우 산안법 규제 전인 상황에서 화평법, 화관법 적용 가능성 여부
- ○ 목록 개정 관련 절차

❑ 법률 개정시 검토 사항

- ○ 치명률이 높은 업무상 질병과 사망의 법적용 상 문제
- ○ 반복성에 대한 추가 보완
  - • 감독을 통해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제재를 받았음에도 경영책임자가 고의적으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아 만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토론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토론문
– 직업성질병 등 기타사항 –

한국경영자총협회
임 우 택 본부장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토론회 토론문

- 직업성질병 등 기타사항 -

한국경영자총협회(2021.8.19)

1 서론

□ 정부가 법률 취지에 충실히 부합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사망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으로 그 대상을 한정해야 할 것임

□ 시행령(안)은 비록 법률에 제시된 '급성 중독'을 중심으로 직업성 질병 목록을 규정하였으나, 단기간 치료와 회복이 가능한 경미한 질병이 포함되고 형사처벌 기준으로서 부적절한 포괄적 유해요인 및 질병 규정으로 문제 소지가 다분함

□ 직업성 질병 목록에 중증도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수정·보완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 문제점과 개선의견은 아래와 같음

2 직업성 질병자 범위(안 제2조, 별표1)

[시행령(안)]

제2조(직업성 질병자) 법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별표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의 질병(제2조 관련)

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브로마이드·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2. ~ 12. (생 략)
13. 기타 화학적 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및 별표22에서 규정된 화학적 인자에 한한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중독
14. ~ 21. (생 략)
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23. (생 략)
24.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열사병

첫째, 중증도 기준이 없어 법률 취지와 맞지 않은 경미한 질병이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어 불합리한 사업장 조사 및 처벌이 발생할 수 있음

□ 질병자 범위를 유해인자에 따른 상병으로 규정하였을 뿐 부상자(6개월 이상 치료)와 같은 중증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경미한 질병도 주관적 증상 호소 등에 의해 모두 직업성 질병으로 간주

○ '급성 중독' 자체를 중증도가 반영된 질병 목록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하나, 중독 증상을 보인다 할지라도 짧은 기간의 치료와 휴식으로 회복되는 경미한 사례가 더 많아 중증도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실제로 [별표 1] 목록 중 두통, 현기증, 구역, 두근거림, 점막자극 증상 등 상당수 질병은 단시간 치료로 치유가 가능한데, 경미한 수준이라 할지라도 개인 감수성 차이에 따라 증상을 호소할 경우 급성 중독 진단이 불가피

○ 예를 들어 옥외작업이 많은 업종의 대기업 사업장은 다양한 보건관리조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유사 열사병 사례** 다수 발생

* 대형 선풍기 등 냉방기구 설치, 휴게장소 마련, 체온관리 위한 음료(얼음물)·간식(아이스크림, 과일)·의류(팔토시, 스카프 등) 지급, 작업량·시간 조정 등

** 증상자 대부분은 1~2일 휴식 후 회복하여 작업현장에 복귀하고, 이론과 달리 현장에서는 일사병과 열사병 구분을 분명히 되지 않으며, 일각에서는 연간 산재요양 통계를 근거로 열사병 발생 건수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단기간 휴식(치료)으로 회복되는 까닭에 산재요양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중증 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고자 제정된 법률 취지와 맞지 않고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정의 간 비교 시 형평성에 어긋남

○ [별표 1]의 기준으로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사망에 준하는 중대한 사고와 질병에 한정하여 처벌하는 법률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음

○ 중대산업재해의 '사고' 및 중대시민재해 정의가 법률 취지를 감안해 산안법보다 더 중한 재해로 중증도 조건을 설정한 것에 비하여 직업성 질병 목록만 중증도 기준이 부재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정의 (법 제2조제2·3호)

구분		내용	중증도 기준
중대 산업재해	사고	동일사고로 부상자 2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병	**동일유해요인으로 1년 이내 3명 이상**	-
중대 시민재해	사고	동일사고로 부상자 10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병	동일원인으로 질병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 결과적으로 중대재해법 처벌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경증의 질병발생을 이유로 감독기관이 수사를 해야 하는 불합리 문제가 발생할 것임

○ 경미하고 일시적인 증상 발현 경우까지 모두 포함된다면 감독기관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사건 조사로 업무량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

(경영계 입장) 중증도 기준("6개월 이상 치료 필요")**을 마련하고, 주관적 호소에 의존하기 쉬운 경미한 증상은 목록에서 삭제**

□ 법 제2조제2호 나목* 기준을 고려 시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중증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

* (법 제2조제2호 나목)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두통, 현기증, 구역, 두근거림 등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는 증상의 호소만으로 진단이 내려지지 않도록 해당 문구 삭제

둘째, 유해요인과 질병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형사처벌 요건으로 부적합하고, 업무장소 범위도 불분명해 경영책임자의 재해 예방조치에 한계가 있음

□ [별표 1] 제13호의 화학적 인자 숫자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유해인자별 구체적인 급성 중독 질병명도 규정하지 않아, 어느 질병까지 처벌대상에 해당하는지 경영책임자가 예측할 수 없어 형사처벌 요건으로 부적절함

*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등 총 200종 넘게 포함

○ ‘급성 중독’ 정의*상 그 자체만으로는 질병명이라 하기에 불충분하고 구체적 질병 또는 증상이 함께 제시되어야 하는데 제13호는 명확한 질병명이 특정되지 않아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

* 화학 물질이 짧은 기간 내에 생체에 작용하여, 갑자기 질병 상태에 빠지는 현상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질병 목록 중 ‘중추신경계장해’(제1·11호), ‘자율신경계장해’(제11호), ‘위장관계 질병’(제12호) 등도 범위가 지나치게 폭넓고 광범위하여 예측 불가능함

□ 직업성 질병을 유발하는 업무장소(유해요인)가 불분명하여 경영책임자의 관리범위를 파악하기 어렵고, 예방조치 수행에도 한계

○ ‘산소농도 부족 장소’(제22호), ‘덥고 뜨거운 장소’(제24호)는 업무장소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장 내 해당 장소 구분이 불분명하고 적절한 재해 예방조치가 어려움

(경영계 입장) 제13호 내용 삭제, 제22·24호에 해당하는 업무장소는 타법상 구체적 안전조치 의무가 규정된 장소로 한정 바람직

□ 별표1 제13호는 매우 다양한 유해요인을 포괄하면서 표적 질병도 특정하지 않아 법률에서 위임한 직업성 질병 요건에 부합하지 못함

□ 화학물질 등 특정한 유해인자가 아닌 장소 개념 등의 유해요인은 타 법상 구체적 정의와 예방조치 등이 마련된 조건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제22호)는 실제 밀폐공간 작업에서의 질식재해가 중대재해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 해당하는 밀폐공간 장소로 한정 필요

※ 안전보건규칙 제618~644조는 밀폐공간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위한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제24호)는 정확한 온도 기준이 부재하고 주관적 판단에 따라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보건규칙상 ‘고열작업’*으로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

* 안전보건규칙 제558조는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라고 ‘고열’을 정의하고 있으며, 동 규칙에 구체적인 고열작업을 규정하고 건강장해 예방조치도 열거하고 있음

셋째, ‘1년 이내에 3명 이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시행령(안)에 규정되지 않아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질병도 직업성 질병에 포함될 수 있음

□ 법률 및 동 제정안에서 ‘1년 이내에 3명 이상’ 직업성 질병 발생의 판단 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그 기준이 불분명함

□ 이에 따라 업무로 인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질병도 중대산업재해로 포함될 수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이 중대재해를 유발하였다는 전제로 경영책임자를 엄벌하는 구조이므로 반드시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재해만을 대상으로 해야 함

(경영계 입장) ‘1년 이내에 3명 이상’ 여부 결정 시 산재보험법상 요양승인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함

넷째, 법 제2조제2호 가목의 ‘사망자’에 속하는 질병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입법취지와 달리 뇌심혈관질환 등에 의한 사망자가 포함될 수 있음

□ 법 제2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망자’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도 모두 포함될 수 있음

□ 그러나 뇌심혈관질환, 직업성 암, 근골격계질환 등은 정부의 직업성 질병 선정 기준*인 ‘인과관계 명확성(급성), 사업주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충족하지 않아 해당 질병으로 인한 사망까지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함

*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및 주요내용 설명자료, 규제영향분석서 등 참조

○ 또한 사고성 재해 방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인 점을 고려*할 때 만성질환을 중대산업재해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

* 법률 제정 시 법사위원장 대안 제안이유 참조(정부 주요내용 설명자료에 발췌·소개)

□ 특히, 사회보장 강화 취지로 완화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경영책임자 처벌에 영향을 미칠 경우, 업무상 질병 불인정이 증가하고 채용이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임

○ 흔히 '과로사'로 표현하는 사망재해 대부분은 뇌심혈관질환과 관련되어 있는데, 만성질환 특성상 업무관련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움에도 근로자 보호 및 사회보장 확대 취지로 인정기준이 폭넓게 완화되어 왔음

○ 만약 만성질환 사망자까지 법 제2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망자' 범위에 포함된다면 해당 건의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이 처벌과 연계되는 만큼 엄격한 판정이 불가피해 업무상 질병 인정율이 감소할 수 있음

○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잠재적 처벌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가족력 보유자, 기저질환자, 치료 경력 확인자 등 질병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상의 직원(종사자) 채용·계약 자체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경영계 입장) 법 제2조제2호 가목의 '사망자'에 속하는 질병 범위는 동 제정안 별표 1의 질병 목록으로 한정 필요

□ 법률 개정 또는 시행령 제정 시 적절히 반영 추진

3 안전보건교육의 수강(안 제6조, 제8조)

[시행령(안)]

제6조(교육내용과 교육시간)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경영책임자등이 이수해야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② 안전보건교육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비용의 부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첫째, 법 위반 여부 확정 없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만으로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수강을 강제하는 것은 매우 과도하며, 실효성도 없음

□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아 무죄선고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경영자 지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교육수강을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결과책임(벌칙성 성격)을 묻는 것으로서 매우 불합리함

○ 법 위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조사·수사도 하지 않고 판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임

○ 유죄 확정시에만 형사책임과 교육수강을 강제하는 현행법과 비교하여도 지나치게 가혹함

- 현행 산안법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의 행위자로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경영책임자의 책임유무에 관계없이 매번 동일한 교육을 수강하는 것은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음

(경영계 입장) 안전보건교육 수강 대상은 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영책임자로 한정될 수 있도록 교육대상 규정을 신설해야 함

둘째, 교육비 부담규정은 시행령 위임사항이 아니며, 20시간의 교육과 비용까지 경영책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친 제재임

□ 안전보건교육 수강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은 교육 이수방법 및 과태료 부과기준임

□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경영책임자에게 20시간의 교육을 수강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함

○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교육이 6시간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교육시간이 지나치게 많음

□ 안전보건법령상 교육수강 대상이 교육비를 부담하도록 법령에 별도로 규정한 사례는 찾을 수 없음

○ 산안법 제174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수강명령도 국가의 형사제재로 국가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경영계 입장) 교육비 부담규정(제8조)**은 삭제하고, 교육시간**(제6조제2항)**은 6시간으로 완화해야 함**

4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방법, 기준 및 절차(안 제14조)

[시행령(안)]

제14조(공표 대상 및 방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한다.

1.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2.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자 현황
3. 발생재해의 내용, 원인 및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위반 사항
4.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여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임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또는 고용노동부·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첫째, 중대산업재해의 정의를 산안법에 따른 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어 공표대상이 산안법과 중복됨

□ 산안법상 공표대상은 ①연간 2명 이상 발생, ②사망만인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 이상, ③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임

□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는 사망자 외에 부상(동시 2명) 또는 질병자(1년 이내 3명)도 포함되어 있어, 산안법상 공표대상과 중복됨

○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안법에서 공표하지 않는 재해내용 및 원인도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경영계 입장) 동일한 중대재해로 산안법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공표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제1항 후단에 단서규정 마련

토론문

직업성 질병 등

중소기업중앙회
양 옥 석 실장

직업성 질병 등

중소기업중앙회 양옥석 인력정책실장

1 형사처벌 수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중증도 반영 필요

○ 법상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라는 중증도 요건을 규정하였으나, **질병에 대해서는 중한 정도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겠으나, **이 법은 1년 이상의 징역을 처벌을 하는 법**이므로 **다른 형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에 맞는 수준을 요하는 것이 필요**

* 1년 이상의 징역 범죄 : 영리 목적 인신매매, 특수절도, 특수공갈 등(모두 1년 이상)

- 이는 매우 높은 고의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한 형벌로서 산재와는 다름

2 직업성 질병의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

○ 시행령 별표1 13호에 **"기타 화학적 인자 등에 노출되어"**라는 것은 매우 포괄적으로, 질병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명칭으로 구체화 필요

3 직업성 질병에서 열사병 제외

○ 현장에서 열사병은 이론과 달리 1~2일 휴식으로 나아지는 경우가 많음. 몇 일의 휴식으로 낫는 열사병까지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제외 필요

4 원료 또는 제조물의 범위의 구체적 명시 필요

○ 시행령 별표5 12호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생명, 신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을 규정하였으나, 이 또한 매우 포괄적이므로 해당 규정 삭제 필요

○ 아울러 시행령 제10조와 11조에 규정한 원료 또는 제조물 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와 관리상의 조치 범위인 **"관계법령"의 범위가 특정되어있지 않아**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부분도 개선 필요

- 관계법령을 **별표5에서 규정한 원료 또는 제조물 관련 법령으로 명확화**

5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기준 합리화 필요

○ 공중이용시설에 **2,000m^2 이상인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사업장**이 포함됨

○ 이미 주유소와 LPG충전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기준(KGS코드) 등으로 각각 안전관리 규정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형사벌이 적용되면서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불합리함을 호소하고 있음

○ 먼저 **위험도가 비슷한 다른 시설**과 달리 주유소와 LPG만 시민재해 대상에 포함되었음

○ 또한 LPG의 경우 시민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충전소 뿐만 아니라 **시민출입이 거의 없는 용기 충전소까지** 대상으로 함

○ LPG충전소는 **다른 법률상의 의무 준수시 2천 제곱미터를 당연히 초과하게 되어 시민재해 대상에 무조건 포함됨**

- 일률적인 면적 기준으로 대상에 포함되다 보니, **매출이 적은 지방의 주유소들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땅이 넓다는 이유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됨

○ 높은 처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유소와 LPG충전소의 적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 LPG충전소는 자동차충전소에 한하며, 주유소와 LPG충전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건축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바닥면적에 한하여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 법상 다중이용시설 면적 기준과 동일(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토론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中 직업성질병 등 기타사항

한국노총
김 광 일 본부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中 직업성질병 등 기타사항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1. 제2조(직업성 질병자)

제2조(직업성 질병자) 법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 문제점

○ 급성중독 및 급성중독에 준하는 직업성 질병 24개 항목을 시행령 [별표1]로 규정하여 **직업성 질병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성질환(진폐, 난청,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및 직업성암 등이 제외되어 실효성 없는 조항**이 됨.

○ '18~'20년 업무상질병 요양자(사망자 제외) 현황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시행령 직업성 질병의 수는 극히 적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법 제2조제2호다목의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라는 조항 속 문구로 볼 때 [별표1]의 직업성 질병에 해당하여도 처벌받는 사업장은 전무** 할 것.

○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하는데 이는 **산업재해 발생 시 통계대상이 아닌 1~3일 사이의 요양 및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의 경우 통계에 잡히지는 않으나 산업재해이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직업성질병자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음.

○ 구체적인 중증도가 정해지지 않아서 경미한 질병도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영계 주장의 경우 '20년 업무상질병 전체 승인자의 휴업급여 평균지급일수 180일(6개월)을 살펴볼 때 승인받은 **대부분의 업무상질병이 6개월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중한 중증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기에 경미한 질병의 수는 극히 적거나 없을 것.**

- (참고) 한국노총 회원조합인 금속노련 가맹 사업장 중 급성중독으로 1년 이내에 3명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전무하며 실례로 B사업장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장시간에 거쳐 은폐한 사실이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밝혀진 경우도 존재하였음. 실례로 보듯이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직업성질병에 포함되어야 함.

〈참고〉 2020년 업무상질병 승인자의 휴업급여 현황 (출처 : 근로복지공단)

구분	평균지급일수(일)	평균지급액(원)
’20년 업무상질병 전체 승인건(11,432건)	180	17,058,960

〈참고〉 2018~2020년 업무상질병 요양자(사망자 제외) 현황 (출처 : 안전보건공단)

직업병 대분류	해당년도	2018년	2019년	2020년
	직업병	합계	합계	합계
합계		10,302	14,030	14,816
직업병 (진폐 제외)	합계(소음성 난청, 직업성암 제외)	232	264	409
	합계	1,744	2,363	3,259
	물리적인자로 인한 질병	48	50	18
	이상기압	5	3	12
	소음성난청	1,414	1,986	2,711
	진동장해	13	4	4
	유기화학물 기타(화학물질)	2	7	3
	벤젠	6	5	7
	유기화합물 기타(유기용제)	6	7	6
	트리클로로에틸렌	0	0	0
	직업성 천식	0	1	1
	이황화탄소	0	0	0
	석면	49	68	54
	연, 연합금	0	0	1
	수은, 아말감	0	0	1
	크롬	1	1	5
	카드뮴	0	6	5
	직업성 피부질환	16	26	32
	세균, 바이러스	72	75	234
	독성간염	0	0	0
	직업성암	98	113	139
	직업병기타	14	11	26
직업병 (진폐)	합계	966	1,065	876
	진폐	966	1,065	876
작업관련성질병	합계	7,562	10,602	10,681
	뇌혈관질환	640	857	635
	심장질환	56	100	69
	비사고성·작업관련성요통	1,210	1,914	1,712
	사고성요통	2,071	2,362	2,465
	수근관증후군	112	176	172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3,322	4,988	5,252
	간질환	3	1	3
	정신질환	125	184	335
	작업관련성질병 기타	23	20	38

○ 업무상질병의 경우 질병 또는 질환이 연쇄적일 수 있어서 요양기간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업무상사고처럼 뚜렷하게 나눠진다고 보기 어려움.

○ 건설업종에서 우려하는 [별표 1] “24.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열사병”의 경우 ’18~’20년 통계를 상병 기준으로 열사병, 열사병 및 일사병, 일사병, 기타(열실신, 열탈진 등) 등으로 나눠서 본다면 3년간 온열질환 중 **사망자가 발생한 중증도가 높은 상병은 오직 ‘열사병’ 뿐임**. 이는 곧 건설업종에서 우려하는 경미한 온열질환의 경우 [별표 1]의 열사병이 아닌 열사병 및 일사병, 일사병, 기타(열실신, 열탈진 등) 등으로 이미 시행령(안)에 제외된 사망자가 없는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온열질환이라고 봄. 그렇기에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중증도가 높은 열사병의 경우 [별표 1]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참고〉 2018~2020년 업무상질병 중 온열질환자(사망자 제외) 산재현황 (출처 : 근로복지공단)

(단위 : 건)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요양자 합 계	**27**	**23**	**11**
열사병	11	13	4
열사병 및 일사병	6	4	4
일사병	4	2	-
기타	8	4	3

〈참고〉 2018~2020년 업무상질병 중 온열질환 사망자 산재현황 (출처 : 근로복지공단)

(단위 : 건)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사망자 합 계	**8**	**3**	**2**
열사병	8	3	2
열사병 및 일사병	-	-	-
일사병	-	-	-
기타	-	-	-

▣ 개선 방향

○ [별표 1] 일부 수정 및 추가(8개 항목)

- 붙임자료 : [별표 1] 직업성 질병자 - 개선(안) 참고

○ 직업성 질병의 만성질환(진폐, 난청,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중 **재해 발생의 원인이 사고에 기인**하거나 **장시간 노동,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 정신적 긴장이 큰 노동** 등이 들어갈 필요가 있음.

○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재해 발생의 원인이 사고에 기인한 "사고성 요통"**이 따로 분류되고 있음, 이에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직업성 질병에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산재보상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부분을 참고

〈참고〉 산재보상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참고〉 근골격계질환 질환별 요양재해 현황 (출처 : 고용노동부)

단위 :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총계	5,213 (100.00%)	4,947 (100.00%)	5,195 (100.00%)	6,715 (100.00%)	9,440 (100.00%)
신체 부담작업	2,180 (41.82%)	2,098 (42.41%)	2,436 (46.89%)	3,322 (49.47%)	4,988 (52.84%)
비사고성 요통	1,009 (19.36%)	575 (11.62%)	891 (17.15%)	1,210 (18.02%)	1,914 (20.28%)
사고성 요통	1,883 (36.12%)	2,162 (43.70%)	1,747 (33.63%)	2,071 (30.84%)	2,362 (25.02%)
수근관 증후군	141 (2.70%)	112 (2.26%)	121 (2.33%)	112 (1.67%)	176 (1.86%)

○ 뇌·심혈관계 질환(과로로 인한 질병)의 경우 **노동 시간, 노동 강도(육체, 정신, 시차, 교대제, 휴일, 작업환경 등)를 고려하여 직업성 질병자로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산재보상법 시행령 [별표3] 뇌·심혈관계 질환 부분을 참고

〈참고〉 산재보상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제6조부터 제9조(안전보건교육)

제6조(교육내용과 교육시간)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경영책임자등이 이수해야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등 안전보건경영 방안
2.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주요내용
3.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

② 안전보건교육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시기 및 방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일정을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대상자가 지정된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여 1회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교육일정의 연기요청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비용의 부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문제점

○ **2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하는 안전보건교육으로 중대산업재해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확정판결 시 법원이 병과 가능한 200시간 이내의 안전보건교육과 대조적으로 적은 시간)

○ **교육내용을 살펴볼 시**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원인과 예방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보다는 **일반적인 주입식 교육으로 실효성 낮을 것으로 예상**

○ 50인 미만 사업장(50억 미만 건설현장)과 나머지 사업장의 **과태료를 차등을 두어서 실효성을 떨어뜨림**

○ **중대산업재해 2회 이상 발생**한 법인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가중교육**은 없는 상황

▣ 개선 방향

○ 안전보건교육을 받는 경영책임자가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대책과 경영시스템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시간과 내용이 보장**하고 **교육에 따른 향후 안전보건 계획 등을 제출하여 이행 여부 평가를 받을 필요**

○ 규모에 따른 **과태료 차등을 두는 것을 삭제**

○ 중대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경영책임자의 경우 **가중교육 도입**

3. 제14조(공표 대상 및 방법 등)

제14조(공표 대상 및 방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한다.

1.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2.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자 현황
3. 발생재해의 내용, 원인 및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위반 사항
4.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여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임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또는 고용노동부·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문제점

○ 형이 확정된 사업장에 대하여 공표하는 경우 시의성에서 멀어져서 공표제도의 원래 취지인 사고 발생 법인뿐만이 아닌 전체 법인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과 멀어지는 결과를 발생시킴

○ 공표내용에 **원청 기업의 명칭이 제외**, 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 의견서** 및 재해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 위반 사항 제외**

○ **공표게시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는 것은 재해예방 효과를 감소**

○ 공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관보 또는 고용노동부·공단 홈페이지 등에만 게시하는 경우 일반대중이 알기 어려워서 산재의 경각심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부적절

▣ 개선 방향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의 경우 최소한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이 확인되는 **1심 결과 이후로 공표하여 공표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공표내용에 **원청 기업의 명칭을 포함**하고 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 의견서**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 위반사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공표게시 기간을 반영구적으로 설정**하여 중장기적으로 기록을 남겨서 대중들이 산재예방 우수기업과 불량기업 등을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공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관보 또는 고용노동부·공단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일간지, 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공표하여 산재의 경각심 촉구**할 필요

붙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2조(직업성 질병자) [별표 1] - 개선(안)**

[별표 1] 직업성 질병자(제2조 관련)	[별표 1] 직업성 질병자 - 개선(안)
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브로마이드·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2.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 복부 산통, 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 3.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한기, 고열, 치조농루, 설사, 단백뇨 등 급성 중독 4. 일시적으로 다량의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 신부전 등 급성 중독 5.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두통, 현기증, 구역, 구토, 흉부 압박감, 흥분상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 급성 중독 6. 일시적으로 다량의 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 급성 중독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청색증,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급성 중독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소실,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 급성 중독 9. 시안화수소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호흡곤란, 두통, 구역, 구토 등 급성 중독 10. 불화수소·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화학적 화상, 청색증, 호흡곤란, 폐수종, 부정맥 등 급성 중독 11. 인(백린, 황린 등 금지물질)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점막자극 증상, 경련, 폐부종, 중추신경계장해, 자율신경계장해 등 급성 중독 12.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위장관계 질병 13. 기타 화학적 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및 별표22에서 규정된 화학적 인자에 한한다)	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브로마이드·~~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 (대체의견 사유) 염화비닐, 유기주석에 의한 경우는 거의 없고 할로겐화합물에 의한 것이 많으므로 더 적절한 표현은 - 브롬화메틸, 디클로메탄, 디클로로프로판 등 할로겐화합물에 의해 발생하는 중추신경계의 급성 중독 2.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 복부 산통, 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 3.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한기, 고열, 치조농루, 설사 단백뇨, 안면 및 수지진전(떨림) 등 급성 중독 증상 - (대체의견 사유) 수은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증상으로 안면 및 수지진전(떨림) 등도 포함 4. 일시적으로 다량의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 신부전 등 급성 중독 5.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두통, 현기증, 구역, 구토, 흉부 압박감, 흥분상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 급성 중독 6. 일시적으로 다량의 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 급성 중독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청색증,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급성 중독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소실,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 급성 중독 9. 시안화수소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호흡곤란, 두통, 구역, 구토 등 급성 중독 10. 불화수소·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화학적 화상, 청색증, 호흡곤란, 폐수종, 부정맥

[별표 1] 직업성 질병자(제2조 관련)	[별표 1] 직업성 질병자 - 개선(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4.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16.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 질병은 제외한다. 17.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18.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19.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20.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21.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압착증,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감압병(잠수병), 공기색전증 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23.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무형성 빈혈 24.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열사병	등 급성 중독 11. 인(백린, 황린 등 금지물질)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점막자극 증상, 경련, 폐부종, 중추신경계장해, 자율신경계장해 등 급성 중독 12.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위장관계 질병 13. 기타 화학적 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및 별표22에서 규정된 화학적 인자에 한한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4.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3개월이내에 새로이 발생한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16.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클로로메탄 등 할로겐화탄화수소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3개월이내에 새로이 발생한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 질병은 제외한다. - (대체의견 사유) 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클로로메탄 등 할로겐화탄화수소 등으로 인한 독성 감염도 빈발 17.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18.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19.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20.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21.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압착증,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감압병(잠수병), 공기색전증 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23.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무형성 빈혈

[별표 1] 직업성 질병자(제2조 관련)	[별표 1] 직업성 질병자 - 개선(안)
	24.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열사병 〈8개 항목 추가〉 1. 노말헥산, 아크릴아미드에 의한 다발성 말초신경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새로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자가면역질환, 당뇨, 감염, 선천질환, 종양 등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말초신경염은 제외한다. - (보완의견 사유) 2005년 태국인 노동자가 6명이 동시 발생 사례) 2. 메탄올에 의한 시신경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새로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감염, 약물, 육아종, 베쳇, 루프스 등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시신경염은 제외한다. - (보완의견 사유) 2016년 6명의 노동자의 집단 시신경 손상 사건.) 3. 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뇌의 저산소증 - (보완의견 사유) 위 화학물질과는 질병 발생 기전이 다름 4. 테트라메틸 암모늄산화수소(TMAH)에 의한 급성 호흡기증상, 의식소실, 심부정맥증 - (보완의견 사유) 간혹 발생하는 사건 5. 방동제 음용에 의한 의식손실 등 급성중독 증상 또는 소견 - (보완의견 사유) 건설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례 6. 잠수작업 후에 발생한 잠수병 7. 한랭작업 후에 발생한 레이노드증후군 (혈관이나 신경이 손상된 경우). 다만 노출 중단 후에는 1년이 지나지 않아 새로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충격성 소음에 노출된 후 발생한 돌발성 난청 〈업무상질병 中 일부 질환 추가〉 9. 근골격계 질환 중 재해 발생의 원인이 사고에 기인한 사고성요통(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근골격계 질병의 라목을 따른다.) 10. 뇌심혈관계 질환 중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별표 1] 직업성 질병자(제2조 관련)	[별표 1] 직업성 질병자 - 개선(안)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 - 115호를 따른다)

〈참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 - 115호 中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토론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토론문
– 직업성질병 등 기타 –

민주노총
최 명 선 실장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토론회 토론문 (2021.08.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직업성 질병등 기타

1. 시행령 2조 별표 직업성 질병의 범위

-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상의 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

1) 법령자체에서 동일한 처벌임에도 시민재해보다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직업성 질병

-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의 질병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한 처벌임. 그러나, 중대산업재해는 〈동일한 유해요인〉 〈1년 이내 3명이상 발생〉 으로 적용요건이 시민재해보다 엄격함. 유해위험 요인의 노출시간이나 빈도가 훨씬 높을 수 밖에 없는 노동자의 직업성 질병을 시민재해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비상식적인 규정임

- 법령의 제한적인 요건에다 더 해서 질병의 종류를 시행령에 위임해서 더욱 더 협소하게 하고 있으며, 시행령 2조는 급성 중독성 질병 24개로 제한하고 있음. 시행령으로 제시된 24개 급성중독성 질병이 1년 이내 3명이상 발생한 경우는 최근 10년 동안 없으며, 사실상 법 조항을 시행령으로 무력화 시키는 것임

2) 시행령에서 동일한 질병임에도 사망 여부가 대상 기준이 되는 비상식과 불합리성

- 중대 산업재해의 정의에서 사망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시행령에 따르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뇌심질환의 경우 사망은 법 적용대상이 되고, 식물인간 등 장기 치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직업성 암의 경우에도 사망은 적용되고, 평생을 의료기기에 의존해 살아가야 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결과로 귀결됨

-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과로사 다발 사업장인 집배 노동자, 택배 노동자의 경우 개인요인이 아니라 과중노동, 분류인력 투입의 전가 등으로 인한 장시간 과중노동이 발생했음. 이는 개인적 요인이 아니라 기업의 인력 및 예산배치의 문제였고, 이에 대한 사회적 확인이 되고 있음. 이를 사망여부를 기준으로 기업의 조직적, 구조적 문제여부를 구분할 수 없음.

3) '급성중독 등'의 법령의 해석

-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급성중독으로 한정하거가,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질환을 논의한 바가 없음. 인과관계의 명확성은 급성과 등치될 수 없는 개념임.

- 법 2조 2항 다의 '급성중독 등'에 대한 해석은 '급성중독으로 한정하는 취지'가 아님. 무수한 법령에서 '---등'은 제한적 요소가 아니라 예시적 문구로 하위법령에서 폭넓게 규정되어 왔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 2(고압가스의 품질 유지) ① -- 중략--- 고압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	제15조의3 (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 중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란 냉매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또는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중략-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5조의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사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같은 영유아의 욱아를 위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중략—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	제41조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바랭등에 관한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같은 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4) 직업성 질병에 대한 기업의 예방의무

- 한국의 직업성 질병은 산재보상 통계로 한정해도 2019년 15,195명, 2020년 15,996명에 달하고 있고, 사망은 2019년 1,165명, 2020년 1,180명이다. 사고성 재해와 같이 직업성 질병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유형의 직업성 질병이 반복 발생하고 있고, 직업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현장에서 형해화 되어 있음.

질병의 종류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 안전보건관계 법령 명시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근로기준법53조 - 법130조 특검
2. 근골격계 질병	- 법39조 보건조치 대상 - 안전보건규칙 12장 (656~666조)
3.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 법39조 보건조치 대상 - 안전보건규칙 1/2/3/9/10장 (420조~511조,605~645조) - 법125/130조 작측/특검 - 법104~118조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대상
4.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 법39조 보건조치 대상 - 안전보건규칙 4/5/6/7장 (512조~591조) - 법125/130조 작측/특검 (예외;야외 온열/한랭)
5. 호흡기계 질병	- 법39조 보건조치 대상 - 안전보건규칙 1/2/3/4/5/ 6/7/9/10장 (420조~511조,512조~591조, 605~645조) - 법125/130조 작측/특검 - 법104~118조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대상
6. 간 질병	
7. 피부 질병	
8. 림프조혈기계 질병	
9. 직업성 암	
10. 눈 또는 귀 질병	
11. 감염성 질병	- 법39조 보건조치 대상 - 안전보건규칙 8장 (592~605조)
12. 신경정신계 질병	- 법41조 감정노동 보호 - 안전보건규칙 669조 - 근로기준법76조의 2/3 (직장 내 괴롭힘)

5) 동일유해요인, 1년 이내 3명이상 발생,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을 모두 충족해야 처벌 대상

- “동일한 유해요인”, “1년 이내 3명이상 발생”은 그 자체로 직업성 질병과 관련된 법령 위반등 기업의 조직적, 구조적 문제로부터 비롯된 중대재해임. 직업성 질병의 발생 자체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위반 등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이 있을 때 처벌하는 것이므로,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대한 기업의 예방의무 준수를 강제하도록 해야 함

- 직업성 질병은 더 이상 선심 쓰듯이 보상을 확대하는 차원의 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님. 조선업 노동자 보다 심각한 중노동을 하면서 방학이 되면 골병 치료하느라 병원을 전전하고, 개학하면 또 다시 부족한 인력에 중노동을 하면서 대체인력이 없어 병가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학교급식 노동자, 옆 동료의 말소리도 안 들리는 현장에서 소음성 난청에 시달리다 퇴직하면 보청기에 의존하고 살아야 하는 노동자가 지속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의 직업성 질병에 대한 예방조치가 작동되도록 해야 함. 중대재해기업처벌 제정은 직업성 질병에 대한 예방제도가 현장에 실물 작동하도록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임.

6) 개정 요구안

○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의 직업성 질병 목록을 전체 명시하고 적용. 산재보험법의 포괄적 인정기준을 포함. ○ 1년 이내 3명 발생 규정에서 1년 이내의 기준은 진단일을 기준으로 함.

2. 중대 산업재해 안전교육 및 공표제도

1) 경영책임자의 안전교육

-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에 대한 노동자 책임전가,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 교육내용에는 재해발생 사업장 노동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태도와 관점 및 피해자 유족의 권리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

- 안전교육 미 이수에 대한 과태료가 매우 낮아 경영책임자의 교육이수의 유인요인으로 한계가 있음. 과태료 상향이 필요하고, 과태료 감경의 개별 기준으로 ‘사업여건의 악화로 기업경영의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감경 요인은 삭제해야 함

2) 시행령 14조 공표제도

- 대 기업의 경우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 년간의 장기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형이 확정 된 이후의 공표는 재발방지 라는 공표제도의 효과가 크게 삭감될 것임.

- 영국의 산업안전보건청은 1심 판결이 선고되면 언론보도자료 게시 및 자료요청 시 제공함. 영국 사례도 있고 재발방지 효과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1심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공표제도가 시행되어야 함.

- 관보 또는 노동부나 공단 홈페이지는 일반 노동자, 시민의 접근성이 낮아 공표제도의 효과가 반감됨. 일간지나 유력 포털에 공표하도록 하고, 5년 내 가중처벌 조항과 연동하여 게시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 되어야 함.

별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제4호 및 제2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0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4장 보칙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

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②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

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1. 1. 26.] 제16조

부 칙 〈제17907호, 2021. 1.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별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대통령령 제 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업성 질병자) 법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 가목에 따른 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2. 법 제2조제4호 나목에 따른 시설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 다만, 공동주택이 그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된 경우 그 건축물 및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법 제2조제4호 다목에 따른 영업장
4. 법 제2조제4호 라목에 따른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물. 다만, 법 제2조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도로교량

나.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철도교량

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터널

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

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이 운영하는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4조(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사업 및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업무장소 및 작업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각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을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라 지정된 자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업종 및 규모를 고려하여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할 것

나. 가목에 따라 배치하는 전문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시간을 보장할 것

4.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
5.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것. 다만, 제3호 가목에 따라 각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합이 3명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6.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확보 및 개선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반기 1회 이상 청취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 이 경우 의견청취 등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64조 및 제75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협의체를 통한 논의 및 심의·의결로 갈

음할 수 있다.

7. 사업 또는 각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대피, 보고,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절차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및 발생보고 등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반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할 것
8.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것

가.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

나.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적정한 안전 및 보건 관리 비용과 수행기간

제5조(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반기별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것.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
2. 제1호의 보고를 받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6조(교육내용과 교육시간)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경영책임자등이 이수해야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등 안전보건경영 방안
2.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주요내용
3.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

② 안전보건교육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시기 및 방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일정을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대상자가 지정된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여 1회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교육일정의 연기요청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비용의 부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10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이 적정 규모로 배치되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한 업무가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2.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검토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되도록 할 것
3. 별표 5에서 정한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것

가. 원료 또는 제조물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나. 원료 또는 제조물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조치요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보고 절차,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 절차, 추가 피해방지 조치 및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연 2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미흡하다고 평가될 경우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1항제3호의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점검하고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할 경우 그 개선에 관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부담한다.

제11조(원료·제조물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원료·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제조물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연 2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거나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고,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력 배치, 추가 예산편성·집행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점검을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거나 확인한 결과를 보고받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지시할 것

제12조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매년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이 적정 규모로 배치되어 있는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을 것

가. 제3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 및 그 편성 여부

나. 기 편성된 안전·보건 관련 인력에게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적정한 업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2. 매년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안전 관련 예산이 적절히 편성·집행되었는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을 것

가. 제3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 및 그 편성 여부

나. 기 편성된 안전관련 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3. 매년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 충실히 이행되도록 할 것. 다만,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6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음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공중교통수단의 경우에는 장비의 확보를 포함한다)

나.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공중교통수단의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

다.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매년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기 계획된 안전점검 등이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을 것

5.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위기관리대책이 수립되도록 할 것. 다만,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포함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기대응계획을 포함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한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음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 종사자 또는 이용자 등이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조치요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보고,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라. 비상상황 또는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대피훈련에 대한 사항은 모든

공중교통수단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종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6. 연 2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확인·점검하고 안전계획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인력·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 설계·설치·제조에 대한 보완·보강 요청, 이용 제한 등 그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고 공중이용시설과 그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가.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나. 위탁업무 수행 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비용의 지급

제13조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의 안전·보건을 보호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직접 확인하거나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 시 의무의 이행 또는 개선·보완을 지시할 것.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시설 및 설비를 정비·점검하는 종사자가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지시할 것

제4장 보칙

제14조(공표 대상 및 방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한다.

1.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2.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자 현황
3. 발생재해의 내용, 원인 및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위반 사항
4.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여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임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또는 고용노동부·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5조(서면자료의 보관)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이행에 관한 내용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영은 2022.1.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의 질병(제2조 관련)

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브로마이드·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2.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 복부 산통, 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
3.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한기, 고열, 치조농루, 설사, 단백뇨 등 급성 중독
4. 일시적으로 다량의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 신부전 등 급성 중독
5.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두통, 현기증, 구역, 구토, 흉부 압박감, 흥분상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 급성 중독
6. 일시적으로 다량의 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 급성 중독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청색증,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급성 중독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소실,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 급성 중독
9. 시안화수소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호흡곤란, 두통, 구역, 구토 등 급성 중독
10. 불화수소·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화학적 화상, 청색증, 호흡곤란, 폐수종, 부정맥 등 급성 중독
11. 인(백린, 황린 등 금지물질)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점막자극 증상, 경련, 폐부종, 중추신경계장해, 자율신경계장해 등 급성 중독
12.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위장관계 질병
13. 기타 화학적 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및 별표22에서 규정된 화학적 인

자에 한한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4.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16.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 질병은 제외한다.

17.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18.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19.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20.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21.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압착증,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감압병(잠수병), 공기색전증

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23.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무형성 빈혈

24.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열사병

[별표 2] 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시설(제3조제1호 관련)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10.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1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1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15.「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16.「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17.「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18.「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객석 수 1천석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19.「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별표 3]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시설물안전법」 상 시설물(제3조제2호 관련)

1. 교량			
가. 도로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4)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3)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나. 철도교량	1) 고속철도 교량 4)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2. 터널			
가. 도로터널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4)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5)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3)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나. 철도터널	1) 고속철도 터널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3. 항만			
가.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1)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나. 계류시설	1)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4. 댐	1)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2) 지방상수도전용댐	3)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건축물	1)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2)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6. 하천 가. 하구둑	1) 하구둑	2)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나. 제방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다. 보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지방상수도
나.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8. 옹벽 및 절토사면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9. 공동구	공동구		

비고

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댓값을 말한다. 한 경간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3.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4. 터널 및 지하차도의 “연장”이란 각 본체 구간과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구간을 포함한 거리를 말한다.
5. 도로교량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6. “방파제, 파제제, 호안”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외곽시설을 말한다.
7. “계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을 말한다.
8. “댐”이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수지·댐을 말한다.
9. 위 표 제4호의 용수전용댐과 지방상수도전용댐이 위 표 제7호가목의 제1종시설물 중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 시설로 본다.
10. 위 표의 건축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1.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2. 건축물의 층수에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한다.
13.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1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을 말한다.
15. “철도 역시설”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선하역사(시설이 선로 아래 설치되는 역사를 말한다)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교량시설물에 포함하고, 지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터널시설물에 포함한다.
16. 하천시설물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상위 행정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한다.
17. “포용조수량”이란 최고 만조(滿潮)시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潮水)의 양을 말한다.
18. “방조제”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방

조제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말한다.

19. 하천의 “통관”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20. 하천의 “다기능 보”란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 및 도로(하천 횡단)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보를 말한다.

21.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의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수원지시설, 도수관로·송수관로(터널을 포함한다),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및 배수지를 포함하고,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22.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하며, 수용시설(전기, 통신, 상수도, 냉·난방 등)은 제외한다.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를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이 경우 위반행위를 한 날은 하나의 교육일정에서 최초로 참여하지 않은 날을 의미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의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기업경영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교육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기업의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건설업의 경우 전년도 전체 공사수주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500	1,000	1,500
	나. 그 밖의 경우	1,000	3,000	5,000

[별표 5] 제10조제1항제3호의 "원료 또는 제조물"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 가스
2.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原劑) 및 농약활용기자재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7.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醫藥外品)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8.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9.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료기기
10.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12.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생명·신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